

소규모 사업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토론회

2022년 4월 8일(금) 14시

 부산노동권익센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개 요

분류	내 용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8일(금) 14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주최	부산노동권익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좌장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발표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토론자	토론1. 박기욱(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센터장)
	토론2.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토론3. 성지민(부산노동권익센터 주임)

진행순서

시간	내 용
14:00~14:15	‘15 토론회 취지 및 참가자 소개
14:15~15:00	‘45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방향
15:10~15:25	‘15 토론1. 취약사업장 건강관리 사례 발표
15:25~15:40	‘15 토론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사례발표
15:40~15:55	‘15 토론3. 소규모(작은)사업장 안전보건관리방향 고민 지점
15:55~16:30	‘3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자료순서

발제문.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류현철)	4
토론문 1. 취약사업장 건강관리 사례 발표(박기옥)	34
토론문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사례발표(문길주)	40
토론문 3. 소규모(작은)사업장 안전관리방향 고민(성지민)	52
메모장	60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류 현 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보건지도사



노동자들은 왜 위험해지는가?

위험 : 기업 vs. 노동자 위험(Risk), 안전(Safety), 이윤(Profit)

• 노동자의 위험(리스크)

- 위험 vs. 안전
- 신체와 정신의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확률
- 노동자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건강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 기업의 위험(리스크)

- 위험 vs. 이윤
- (주로 생산과정의 지연이나 지체에서 오는)이윤 손실의 가능성이나 확률
- 기업은 이윤손실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위험 관리



위험 : 기업 vs. 노동자 위험(Risk), 안전(Safety), 이윤(Profit)

-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벌금과 처벌
- 사전예방 비용보다 값싼 사후처리 비용
-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험과 직결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 획득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
- 사업장을 쪼개고, 편법적인 고용계약관계를 만들고, 기업은 제도적 공백을 이용한 위험의 외주화 유혹

현재의 한국, 위험의 외주화

- 기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한 것은 위험이 상존하지만 위험의 책임은 소각되는 법제의 맹점에 있음
 - 위험관리에는 필연적으로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 비용과 자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충족시키고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 소규모, 영세성을 이유로 관리 영역 외부에 방치하는 상황
-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의 차등이 주요 문제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규정) 구성의무가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에 대해 묻고 있음 → 이러한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인적 구성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의무조차 없는 상황
 -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을 받을 통로가 없음(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 유일하나 의무는 아니며, 포괄적 개념 설명에 그침)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도 아님

현재의 한국, 위험의 외주화

-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이나 내용을 누군가는 공급해야 하는 상황
 -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원청의 역할?
- 정부의 역할
 - 효과적인 지원과 철학을 가진 규제 부재(아프지 않은 채찍과 맛있는 당근)
 -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 평가 인정), 건강 디딤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근로자건강센터, 직종별 건강진단, 패트룰 현장점검 등 다양한 사업
 -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우선 순위 선정 없이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지원, 물량과 실적 위주의 패트룰
- 지자체의 역할
 - 산업안전보건 규제 행정은 지방 정부에게 이양되어 있지 않음
 -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 무관심 혹은 소극적 대응
- 원청은 책임없이 위험을 통해서 이윤을 얻어가는 상황
 - 노동자의 죽음에 500만원도 되지 않는 벌금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부재

어떤 노동자들이 더 위험해지는가?

소규모사업장, 하청노동자, 공식 통계 밖이 노동자, 새로운 유형의 종속적 계약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_2019년 산재요양 승인 통계

	총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수	2,680,874	1,970,387	360,369	190,872	64,557	46,770	28,544	15,328	2,240	1,227	580	2,632,955
분포	100.00%	73.50%	13.44%	7.12%	2.41%	1.74%	1.06%	0.57%	0.08%	0.05%	0.02%	98.21%
근로자수	18,725,160	2,996,744	2,343,198	2,538,170	1,533,152	1,752,262	1,942,824	2,459,398	846,436	833,188	1,479,788	11,163,526
분포	100.00%	16.00%	12.51%	13.55%	8.19%	9.36%	10.38%	13.13%	4.52%	4.45%	7.90%	59.62%
요양제해자수	109,242	34,522	15,872	15,769	8,860	8,655	7,825	8,263	2,645	2,710	4,121	83,678
요양제해 천인율	5.83	11.52	6.77	6.21	5.78	4.94	4.03	3.36	3.12	3.25	2.78	7.50
분포	100.00%	31.60%	14.53%	14.43%	8.11%	7.92%	7.16%	7.56%	2.42%	2.48%	3.77%	76.60%
업무상사고제해자수	95,212	32,064	14,427	14,190	7,884	7,611	6,660	6,605	1,765	1,649	2,357	76,176
업무상사고 천인율	5.08	10.70	6.16	5.59	5.14	4.34	3.43	2.69	2.09	1.98	1.59	6.82
분포	100.00%	33.68%	15.15%	14.90%	8.28%	7.99%	6.99%	6.94%	1.85%	1.73%	2.48%	80.01%
업무상사고사망자수	855	301	110	128	57	64	70	77	22	15	11	660
업무상사고사망 만인율	0.46	1.00	0.47	0.50	0.37	0.37	0.36	0.31	0.26	0.18	0.07	0.59
분포	100.00%	35.20%	12.87%	14.97%	6.67%	7.49%	8.19%	9.01%	2.57%	1.75%	1.29%	77.19%
업무상질병요양자수	14,030	2,458	1,445	1,579	976	1,044	1,165	1,658	880	1,061	1,764	7,502
업무상질병 천인율	0.75	0.82	0.62	0.62	0.64	0.60	0.60	0.67	1.04	1.27	1.19	0.67
분포	100.00%	17.52%	10.30%	11.25%	6.96%	7.44%	8.30%	11.82%	6.27%	7.56%	12.57%	53.4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비용(시설, 장비, 적정인력, 관리인력 등)이 소요
 -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관리에 따르는 자원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
 - 사업장의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며, 사업주의 의지, 비용투자의 우선순위, 규제 정책의 실행 방식 등의 여러 요인이 결부
- 정부 안전보건 행정 철학의 문제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영세성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면제, 사업들에는 주로 사후적 책임만을 지우며, 사전적 위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제대로 지원하지도 규제하지도 않음 → 책임의 공백
 - 안전·보건에 대한 형식적 책임(처벌)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내용적인 책임(예방)은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
 - 50인 미만인 사업장 수의 98%,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며 산재의 77%가 발생
 - 그럼에도 행정적 규제와 관리의 외곽에 위치시키고 사각지대로 치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 기업들은 공장과 회사를 쪼개기만 하면 규제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의 외주화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짐

하청 노동자

- 하청 기업에게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이 없음
 - 일정이나 공기를 조정할 수 없으며, 설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이원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과 공백 상태
- 하청기업 간 위험 업무 조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상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음
 - 하청 업체들은 생산성과 속도, 위험 감수를 전제로 계약을 유지
 - 위험을 무릅쓰는 경쟁 관계에 놓임
-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고용상의 차별과 불평등
 - 불안정 노동과 잦은 이직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숙련도의 저하는 위험의 증가로 귀결
 - 하도급은 주로 위험하거나 기피하는 공정부터 이루어지며, 하청 업체에 취업하는 순간부터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
- 원청의 경우
 - 위험 방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벼움
 - 하도급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대한 처벌이 경미
 - 위험의 결과에 따른 생산과 유통의 중단이나 지체에서 오는 문제만이 관심
 - 안전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과 건강의 연속성, 권리(권력)없는 노동자들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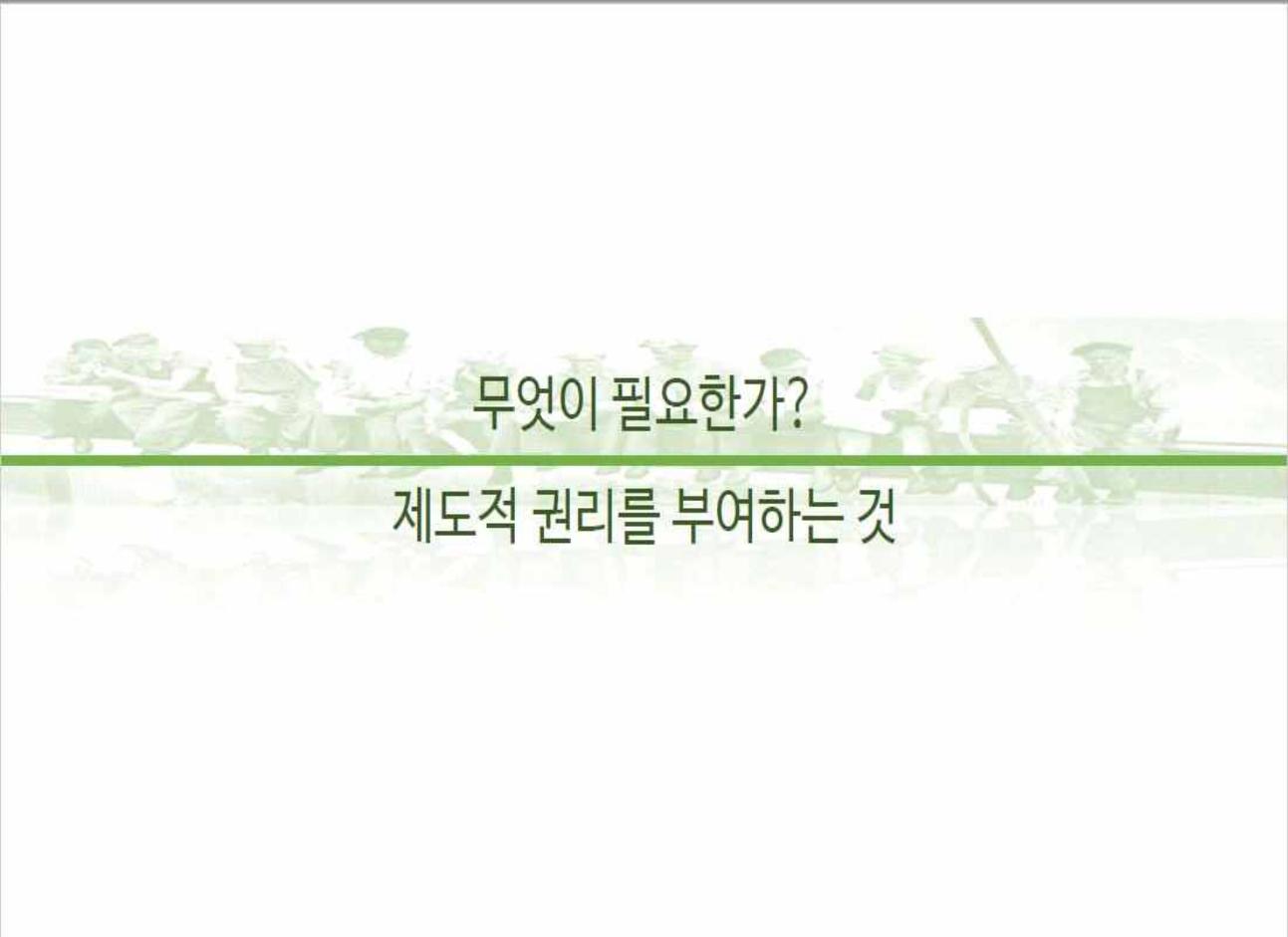


노동자 건강의 다양한 위험요인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스트레스, 과로.. 무엇보다도 **해고와 실직!!**

- 생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해고, 실업, 실직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유해인자
- 자신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권력'(power)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이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게 됨
- 권리와 권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위험감수를 전제로 일자리를 유지하게 됨
-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가?

정치가 작동해야

- 노동자의 위험하면 기업이 위험해지고, 노동자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만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
- 시민사회의 압력, 언론의 역할 → Name and Shame
-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안전의 가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안전 보건의 관점이 도입되도록 진전이 필요함
-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이들을 대변하고 권리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 일터의 위험을 다루고 관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윤추구 방식에 대한 가치적 개입이 요구될 것이며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새로운 법제와 작동하는 행정기구로서 가능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 필요한가?

제도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산재보험 제도의 재설계

- 취약계층(?)은 제도적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됨
- 적용대상 →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포섭하고 있음 →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고 등을 통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산재진입장벽의 주요한 원인은 **요양결정부터 요양종결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된** 제도에 있음, 재활에 대한 진전도 있으나 복귀 관련해서는 여전히 더딤
- 요양기간 동안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고용보장 →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는 산재 승인 이전과 요양종결 이후의 문제 심각**
- **사회복귀(직장복귀 return to work)를 전제로 설계 되어 산재 신청하는 순간부터 사회 복귀까지 생활과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구성이 필요함** → 상병수당, 법정유급 휴가 등의 보완 등 복지안전망에 대한 제고 역시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재편

- 2019년 전부개정을 통해서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노동자 정도가 포괄됨
 - 보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나열된 안전·보호 조치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
-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제
 - 전통적 노사관계, 굴뚝 산업 위주의 낡고 오래된 위험에 대한 관리 중심의 법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문제, 첨단 산업의 새로운 위험, 서비스 산업의 안전보건 문제
 - 전통적인 노사관계와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위험의 책임 문제(원하청, 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 사고성 재해가 아닌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 및 심장질환, 정신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관리의 문제
 - 제조업/건설업 등 오래된 산업, 오래된 고용계약 관계에 기반, 지시적 나열적 규제 중심
 -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교묘한 규제회피에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수
- 새로운 안전보건법제의 필요성
 -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 현장 작동성도 검토하지 못한 조문을 끼워 넣거나, 이곳 저곳 특별법으로 뺄절하는 방식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재편

- **사업주의 관리책임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함.** 위험관리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임.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체계 재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심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 '체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실행 주체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방법론으로서 '위험성 평가', 자체적 규범으로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것이 결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구축하고 운용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요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제외,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전체가 적용이 제외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의 의무도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여러가지 한계에 대한 도전이 발생, 이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재편

- 도급 금지
 - 위험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실패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의 중대성,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의 지불 능력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도입
- 작업중지권, 작업중지명령의 실효성 강화
 - 위험의 결과에 따른 생산과 유통의 중단/지체에서 오는 손실을 통해 원청의 예방 활동을 강제하는 방법
 -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명령 실효성 강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처벌 효과를 극대화
- 원하청간 권력 차이
 - 사내하청 업체들의 시정 요구권
 -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조직화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의의와 과제

의의	과제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의 명확성 시비를 극복한 법리적 진전	여전히 법리적 공방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
의무주체와 보호범위의 확대,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 도입, 하청/특고/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 적용범위에 예외를 둔 한계
하한형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안법 상의 양형 기준이 낮아서 처벌이 낮았던 것은 아님. 중대재해 조사, 검사 기소, 판사 판결까지 관행의 변화가 필요
산안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열된 지시적 규제만 지키면 되는 것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넓어짐	행정당국의 전문성의 부족은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에 대한 점검을 또다시 매뉴얼화되고 형식화된 조치로 퇴행시킬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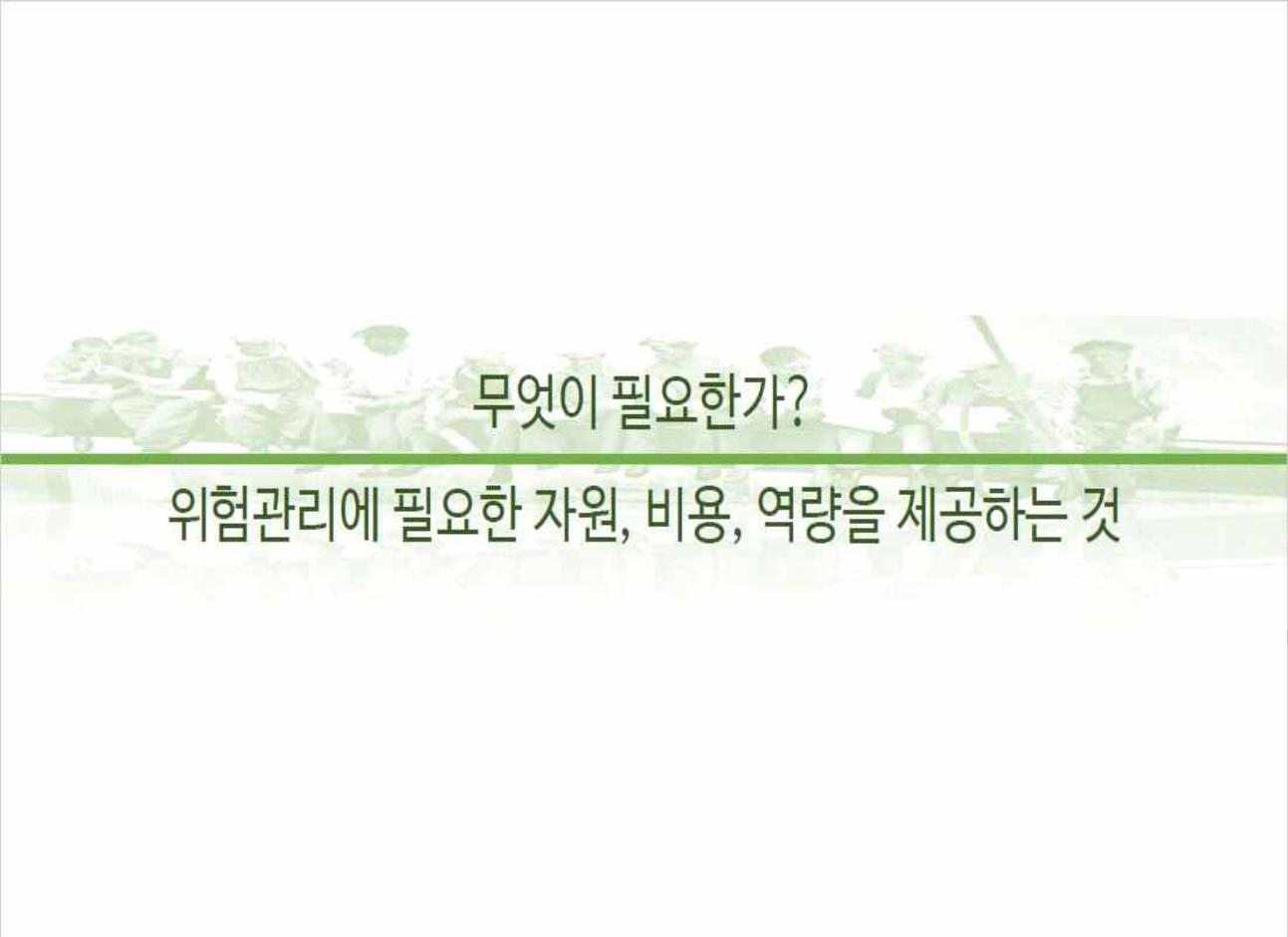
- 노동자들의 질병과 손상 죽음에 대한 기업의 깃털처럼 가볍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가치 중심적인 입법운동의 성과
- 역설적이지만 기존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새로운 법을 만든 것,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진전된 법리를 적용하고 확대하는 새로운 노동안전보건 법제에 대한 필요성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제를 넘어서야

- 새로운 안전보건 법제의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진전된 법리를 도입하는 고민 - 포괄적 의무규정
 - 사업장의 규모,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까지 포괄
 - 규제항목을 일일이 법에 담아 나열하는 지시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목표기반 규제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안전보호의무를 전제로 책임의 주체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을 함께 포함하고 권한과 통제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제가 필요
-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들이 행한 안전보건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전문성과 가치관을 가진 감독관과 행정관료가 필요

새로운 안전보건행정 기관

- 첫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기관으로서 조직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
 - 고용과 생산성 논리, 노사관계의 조율 중심 사고를 극복, 안전과 건강은 합의와 타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원칙에서 얻어지는 것.
- 두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커버리지 수준 등을 예측하고 개입해야
 - 목적의식적이고 단계적인 개입과정 속에서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지원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할 것인지, 적극적 규제를 통해 관리수준의 향상을 강제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배제하고 도태시켜야 할 것인지 가릴 수 있어야
- 세 번째는 지원과 규제 행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 규제와 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전문성의 문제, 전문 기관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은 권한 없는 지원기관
 - 규제와 감독의 권한과 함께 지원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규제와 지원 행정을 적절히 구사하여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 마지막으로 유연하고 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건설교통부 등등의 다양한 부처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무엇이 필요한가?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 비용, 역량을 제공하는 것

효과적인 지원과 철학을 가진 규제

-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에 대해 커버리지 수준 등을 예측하고 목적의식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 이것은 개별 사업장 단위의 위험성평가가 아닌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행정기관이 필요함
- 현재 위험 관리에 필요한 조건과 자원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정 지원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지 평가하고, **지원 혹은 배제/전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 위험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필요
 - 위험이 작은 사업장으로 전가되고 영세성을 이유로 작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유예하고, 사양산업으로 자연도태되기를 기다려서는 안됨
 - 위험의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손상과 질병, 죽음으로 나타나게 됨
 - 산재발생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인 관리나 감독이 아닌 중장기적 관리 목표에 기반한 기획 감독이 필요함

효과적인 지원과 철학을 가진 규제

- 정부의 작은 사업장 지원 사업은 목적과 방향이 없는 퍼주기식 금전 지원이 대부분이었음.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우선 순위 선정도 없이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지원책을 구사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작은 사업장의 위험관리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국가, 정부, 지자체 각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획하고 수행할 **건전한 안전보건행정조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공공 직업안전 및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 안전보건공단의 예산과 자원에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전문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을 고민해야
 - 클린 사업장 등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
 - 연차별로 관리해야할 대상 업종이나 특정 위험을 선정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진행해야 하며 개별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적절한 개선 시설 및 장비, 서비스(검진, 측정)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직업건강서비스에 있어서 측정, 검진, 보건관리, 중독성질환 관리, 암/희귀질환 모니터링, 역학조사 등 전달체계를 구성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의 출발 - 위험성 평가의 정상화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인자는 사업주**
- 사업주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을 위해 선임한 이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나 막상 사업주 자신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음
-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모든 사업장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참여에 기반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 모든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출발은 위험성 평가
- 당장에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관리를 위한 비용과 자원을 갖추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주들이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가 그들의 손에 닿게 만들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 몇몇에서 위험성 평가를 '인증'받게 만드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관리
- 세부 업종별 구분 없이 포괄적인 법령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

지원 조직 운영의 정상화와 확장

• 근로자건강센터의 경험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일한 공공 직업건강 서비스 기관
- 건강 상담을 위주로 한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야
- 작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지원, 개입
- 건강디딤돌 사업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직접 연계
- 작업환경개선이 지원에서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면 클린 사업장 지원 우선하고 사업주부담금 면제하는 등의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 국고 기술지원 사업의 기획 관리 역할, 사업 수행요원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연계 등
-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정부와 공공의 직업건강 지원 자원과 비용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수준으로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 노동안전보건 혹은 산재예방 기본 계획 수립, 위원회의 구성
- 노동(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의 지원 조직 설립 → 기존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전망 창출이 필요

지자체의 역할_사업주,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제3장(안전보건교육-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은 적용 제외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적용대상
 - 산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로서의 책임 조항은 지자체에도 적용. 지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사계획, 설계, 시공하는 전 단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반영하도록 의무가 부여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변경, 예산 반영 등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는 것이 필요
- 방 행정 전반에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을 도입하고 노동안전보건과 지역안전을 포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해야

지자체의 역할_산재예방활동 지원

- 현행 법률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또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주로 하여금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부족, 행정력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함
 -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산재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상 사업주의 의무 규정은 느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지원책도 충분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함
 - 고용구조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동 노동, 방문 서비스 노동이 증가하면서 개별 사업주 차원에서의 예방 의무에 한계가 있는 고용이 증가
- 고용노동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제한적임에 반해서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서 예산자원을 확보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구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음
- 지자체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 관내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산안법으로 포괄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들을 활용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일환경건강센터의 새로운 모색

일환경건강센터

일환경건강센터의 지역 내 위상과 역할_2019

직접 서비스 기관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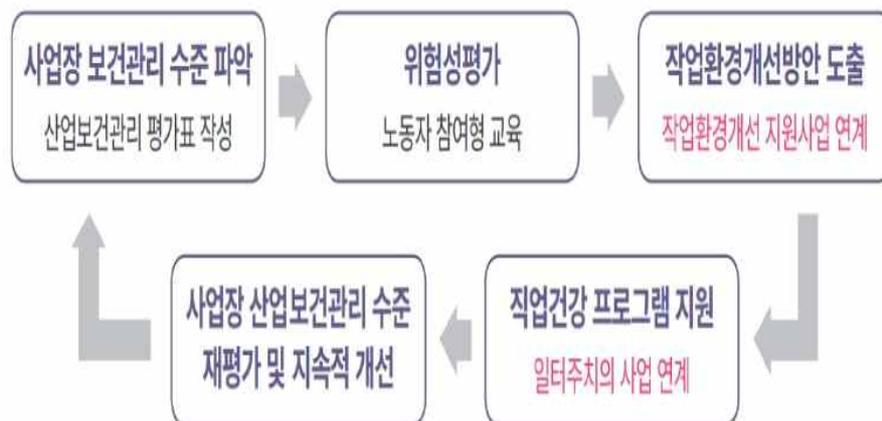
- 지역에 기반한 ‘포괄적’이며 ‘지속적’이며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상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주된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SK 하이닉스 협력업체로 한다.
- 사업장 기반 서비스와 개별 노동자 대상 서비스를 각각 개발하여 유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간접 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 지역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안전보건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하거나 편입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기존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직업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수요의 원인(업종특성, 사업장 규모, 원하청/특수고용/자영업/알바/실습생 등 고용 특성, 컨텐츠의 미비, 훈련된 자원의 부족 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실천적으로 제안한다.
- 지자체, 지역 의회, 공공기관 등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직업건강(노동안전보건) 관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환경건강센터의 사업의 기본틀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보건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업계획은 이러한 센터의 기초와 원칙에 입각해서 기획되고 준비되도록

일환경건강센터의 활동의 지향_현재

- 중소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행가능하며 근거에 기반한 직업건강관리 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지향합니다.
- 실질적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까지 일터 안전보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도모합니다.
- 노동자 및 지역사회 안전보건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설립 취지를 살리며 이의 확산을 위한 전범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전문기관/학계 등 각 분야 자원에 대한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인적 자원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을 조직 운영 원칙으로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1

일터주치의 사업 (사업장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험성 평가(작업환경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장 맞춤형 산업보건지원
 - * 직업건강프로그램 및 작업환경개선 등

소규모사업장의 특성

-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한 규모,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정보의 부족, 노동자 개인의 안전보건 감수성 부족, 장시간 노동, 보건관리 컨텐츠 부족 등 직접 수행 어려움
- 낮은 안전보건 지식, 재정 문제 등 현실적으로 환경개선이 어려움
- 기본적인 법적 보건조치(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이행이 필요하나, 미비한 사업장이 많아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소규모사업장 지원 필요 사업

-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위험의 인지, 평가, 개선의 방향을 인지하도록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지원**
- **작업환경개선 자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주의 주체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고민
- 직업건강의 중요성 인지 및 산업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직업건강프로그램 지원**

[2] 직업건강프로그램 운영

▪ 사업방식

- 유해·위험요인(컨설팅 결과 및 기존 산업보건자료 활용), 사업장 및 노동자 Needs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운영

▪ 사업방법

- 1 고위험 그룹 개별 전문상담 및 지도
- 2 집단 프로그램 운영
- 3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특성 및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업을 수행
※ 필요시 병행하여 수행 가능

➢ 프로그램 내용 검토(피드백)

- ✓ 사업장 의견수렴
- ✓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

➢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송부

직업 건강 지원 프로 그램

직업병 및 기초질환 건강상담-직업환경의학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맞춤형 보건관리 방안 상담 • 위험노출 특성별 직업환경 관리방안 검토 •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 제공 •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 예방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산업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위험군별 맞춤관리 • 건강파악을 위한 간이검사 진행 •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제공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물리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원인 조사 및 질환별 맞춤운동 제공 • 업무 복귀 전/후 재활운동 제공 • 이동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상담 • 성격 심리검사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및 동료 이해 • 명상을 통한 셀프 힐링 시간 	작업환경 상담-산업위생관리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개선 상담 • 개인보호구 교육 및 실습



(3)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중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

대 상 충북지역 내 **일터주치의 협약을 맺은 사업장 중 10개소** ① 작업환경컨설팅 결과, 고위험평가 사업장
② 작업환경개선 지원 희망 사업장

금 액 사업장 당 최대 500만원 지원 (회수 제한 없으나, 초과 금액은 사업장 부담)

지 원 기 준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보조지원사업 지원품목 및 기준] 참고
- 컨설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환경 지원품에 대해 지원
- 그 외 품목의 경우, 센터의 적합성 평가·심의·결정을 통하여 지원

절 차



필요 서류

The documents shown include:

- Application forms for the job environment improvement support project.
- Evaluation and notification forms.
- Improvement implementation forms.
- Support fund disbursement forms.
- Post-implementation maintenance forms.
- Support fund disbursement forms (repeated).

작업환경개선 사례

● 개선사례_2020년 01호

1) A 사업장

- 근로자수 : 3명
- 생산품 : 방역용 살충제, 기피제, 의약외품



2) 작업환경컨설팅 총평

- 계량 또는 출하 작업 시 증량물(드럼)을 인력작업으로 수행하므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존재
- 포장 작업 시 박스 적재 높이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존재
- 분제 제조 작업공간의 분진 발생하여 호흡기 노출 위험 존재

3) 작업환경개선 신청내용

NO	개선 품목	개선 목적	투자비용
1	반자동 스택커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 출하 시 안전한 적재를 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줄이기 위함	<u>3,299,890원</u>
2	드럼리프트	유제 배합 또는 계량 작업 시 드럼작업을 안전하게 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줄이기 위함	<u>1,143,890원</u>
3	이동식 백필터 집진기	분제를 함유한 제품 제조 시 작업공간의 분진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노출 저감을 위함	<u>1,210,000원</u>

작업환경개선 사례

3) 개선지원 결과

개선 전	개선 후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용기 출하 시 인력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위험	반자동스택커를 활용하여 전동으로 트럭에 파렛트를 올리도록 개선, 인력 부담 감소 및 안전한 적재 가능
계량 작업 시 드럼을 돌려 저울에 올려놓는 인력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위험	유압식 드럼 트럭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드럼을 돌리고 올리도록 개선, 인력 부담 감소
분제를 함유한 제품 제조 시 작업공간에서의 분진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노출 위험	이동식 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 발생 저감, 배출구는 외부로 배출하도록 개선

작업환경개선 사례

● 개선사례_2020년 07호

1) G 사업장

- 근로자수 : 28명
- 생산품 : 농업용기계, 전자식 과일 선별기



2) 작업환경컨설팅 총평

- 외장 마감재 부착, 센서 납땜 작업 시 본드, 신너 사용 및 금속 흠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노출 위험 존재
- 용접 작업 시 용접흠, 금속분진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노출 위험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존재
- 용접, 가공, 절단 공정 내 망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조도 미흡

3) 작업환경개선 신청내용

NO	개선 품목	개선 목적	투자비용
1	본드 작업장 국소배기장치	외장 마감재 부착에 사용되는 본드, 신너에서의 호흡기 노출 위험 저감	8,800,000원
2	납땜 작업장 국소배기장치	전기, 전자 납땜 작업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 금속흠 노출 위험 저감	

작업환경개선 사례

3) 개선지원 결과

개선 전	개선 후
<p>선별기 외장 마감재 부착 작업 시 본드, 신너 사용으로 인한 호흡기 노출 위험</p>	<p>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 예방</p>
<p>선별기 비파괴 당도 센서 납땜 작업 시 흠 발생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p>	<p>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화학물질, 금속흠 발생에 따른 노출 저감</p>

2021년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일환경건강센터 협업

추진 배경

- 통합산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 평가 용역 사업'을 추진(예산:860만원)
- 위험성 평가 후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므로 일터주치의 사업과 연계 방안 협의

사업 내용

-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인증* (*안전보건공단인증))
- 사업장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개선지원
- 직업건강프로그램운영
- 사업장 산업보건관리 지원



향후 계획

- 협업사업결과 평가 → 타사업장 확장 운영
- 사업결과 우수사례 홍보

2

취약노동자 안전보건지원

-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소외된 노동자(플랫폼노동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실습생 등)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동자(장애인노동자, 질식위험작업 노동자 등)들에게 다양한 안전보건서비스를 지원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방식 : 취약직종 중 우선지원이 필요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원을 추진
 - (1단계) 직종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 (2단계) 노동자 및 직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계획
 - (3단계) 안전보건지원 후 결과평가
- 사업방법 : 노동자 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참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지원

- 지역 내에서 노동안전보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
-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실행계획을 모색

장애인노동자 지원사업

목적 : 장애인노동자의 업무수행 지속성 유지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 협력** : 센터-행복모아-SK하이닉스-장애인고용공단(MOU체결)

❖ 2021년에는 충북지역내 소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확대(장애인고용공단-센터 협업)

-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행복모아) 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 사업방식
 - 업무특성평가, 사업장 환경연계 방안 고려, 대상자 특성 및 우선순위 파악 등 장애인 적합 사업 내용을 기획 적용
 - 장애인노동자의 건강특성 및 업무요인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노동자의 Needs 및 Feedback 등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
 - 사업장 담당자(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수행 프로그램 등을 공유
 - 근무형태(2교대 근무)에 따른 조별 운영
 - ✓ 월2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시간 3시간/회 내외

밀폐공간 작업 재해예방 지원사업

목적 : 질식위험장소에 출입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작업수칙을 정착하기 위함

➢ **지역사회 협력** : 센터-충북근로자건강센터

- 대상 : 충북지역내 질식위험장소(폐수처리장 등)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9개소)
- 사업방식 : 재해예방교육 및 장비지원(혼합가스농도측정기, 이동송풍기) 실시



취약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기획과 추진

-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플랫폼(배달) 노동자(근골격계질환예방 상담 및 교육(유튜브 방송))
- 학교실습생(특성화고교 실습환경 컨설팅)
- 요양보호사(산재예방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
- 사회복지사(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원)
- 농업이주노동자(농작업보호구 지원, 캄보디아농업노동 119, 농업이주노동문제 사회화 지원)
- 산재노동자 재활 복귀지원(현장 개선 비용 지원, wearable device 외골격 장비 지원)
- 탈북이주노동자, 예비노동자 심리상담(사회문화적 격차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탐색 및 상담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홍보나 서비스제공에 제한이 많았으며, 취약노동자들의 직종에 맞는 지원방안을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단체, 해당 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이 쉽지 않음

플랫폼 노동자 건강타이틀 프로젝트 (I) - 배달노동자

- ◆ (여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02년 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고용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적용 한계를 받은 노동자 신분으로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음
- 4대 산업 시대에 전담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점이 생기고 있음. 온라인, 오프라인 커리어에서 계속 또는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
- 월에 5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수를 47-5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실제 플랫폼 노동자는 약 20~30만 명으로 추산
- 이에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실태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II 추진배경

-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노동자는 업무특성상 사고 위험도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전국 배달노동자는 약 30만명에 이르며, 44%는 배달원만 505,600명임.
 - 청주 배달업협회 2020년 11월 기준, 24기일 제외이 있음.
-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이해가 낮아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안전보건 확인 등을 제고할 필요
- 배달노동자 제에는 주로 교통사고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타 지자체에서도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충북에서 산재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도정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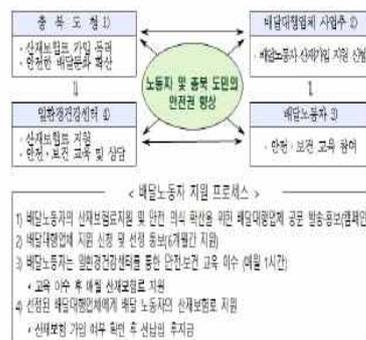
II 지원방안

- 저가저센터가 협업하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보건 교육 및 상담, 안전보건교육 고의 등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단계) 시범사업 운영(2019.9-) → (2단계) 충북 배달노동자 안전한 노동환경 지원(2020년)

- ※ (산재보험료 예선) 시범사업은 저소득 수 있는 예산지자체 사업에 + 센터 사업에 병기 단에서 추진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충북에서 확산을 지원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 월 26,172원(노동자 부담금 13,086원/사단부 부담금 13,086원) (월) 1,000만원의 예산 시 - 13,086원 × 6개월 × 약 127명 지원 가능

(1단계) 시범사업 운영(연)



(2단계) 충북 배달노동자 안전보건지원(2020년-)

1.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시범사업과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2.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

1. 배달 교통사고 감소로 통해 노동자 및 중부 도민의 안전권 향상
2.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에 따른 충북도의 위상 제고



2021년 폭시기 고온고열작업 노동자 건강보호 지원사업안

☞ 21.7.6. 일환경건강센터

□ 추진배경

- 매년 폭시기에는 고온고열작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열질환 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보호 및 대응책안이 시급함 설정
- 고열작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WBGT를 통해 고열 측정 및 평가가 우선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한국특수노동자건강관리(One Temperature) WBGT라 불리는 노동자기 고열환경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열스트레스 또는 과열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WBGT는 기온, 기압 및 복사열을 종합하므로 고열의 위험도를 종합
- 이에 고온고열작업환경에 있는 건설, 금속, 공공학(교육시설), 화학산업 등의 일부 사업장에 WBGT를 측정평가하고, 고열질환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
- ☞ 중남미지역건강관리에서 중 사업을 추진 할때마다 업무 미비로 중을 중단하여 경제적인 중 기우지우로 실패

□ 사업개요(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온고열작업환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WBGT를 측정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호지원 등을 추진
 - 고열작업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리기준과 관리방법 등의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기간 : 2021. 7 - 9월
- 주관기관 : 일환경건강센터, 민주노동 운동지역본부, 금속노조 대원운동본부
- 지원대상
 - 건설, 금속, 공공학(교육시설), 화학산업 등 사업장 15개소
- 지원내용
 - WBGT 측정기 지원(측정방법 교육)
 - 고열질환의 이해 및 예방교육, (필요시)건강상담 지원

(2) 지원 추진체계

민주노동 운동지역본부 금속노조 대원운동본부	주 (일부담당)	일환경건강센터
·사업 안내 → 대상 사업장 선정		·장비 지원, 교육 지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1. 12. 02. 자구인의 정류장 사무국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119
준비기금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

2021년 12월 8일(수)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66도담회실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홍치욱 (공화노조위원장/사무처장)
사업목적소개	이주노동자 119 및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119 사업 경과 소개 주요내용 (공화노조위원장/사무처장/사무국장)
영상시청	이주노동자 영상 설명
발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실태 조사 발표 이현우 (민주노동당/노동자 건강정책팀장)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발표 김영민 (자구인의 정류장)
토론	공화노조 위원 이주노동자 노동조건(현황) 김지현 (공화노조/노동자 건강정책팀장) 이현우 (민주노동당/노동자 건강정책팀장) 김영민 (자구인의 정류장/사무국장)

주최 : 국회의원 김은미(경의당), 국회의원 송미영 | 이주노동119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연결하기-직장복귀 지원사업



보험·의료 협업에서 답을 찾다

01. 돌아가면서

산재노동자 재활 Story |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근로복지공단

3

일원경건강센터
Center for Working Environment Health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안전보건활동 협력

- 지자체, 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보건기관들과 함께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직업건강(노동안전보건) 사업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19년 2개 → '20년 6개기관
- 지역사회 협력 안전보건활동 : '19년 3개기관과 15회 → '20년 19개기관과 63회 활동

- ▶ 청주노사민정협의회-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한 일터만들기 사업 추진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제작·운영
- ▶ 청주상공회의소-SK하이닉스(안전지원)-센터(보건지원)와 함께 지역사회사업장 지원사업
- ▶ 청주산업단지공단 연계 청년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등 직장생활 적응지원 활동 추진
- ▶ 청주통합산업단지공단 연계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지원 추진
- ▶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 참여
-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여 「산업재해예방과 지역 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충북 지속가능 안전포럼」 기획 추진
-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청주대 물리치료학과, 우송대 물리치료학과, 산업보건실습 운영 및 사업장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봉사) 운영



**직업건강
역량강화**

▪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직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사업장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산업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직업건강을 위한 방안 모색

- 지역 직업건강 역량강화 세미나: 정기 2회, 수시 1회
 - 일터에서의 노동자 정신건강관리 및 조직적 개입에 대한 세미나 실시(2회)
 - 장애인노동자의 이해 및 보건관리프로그램(1회)
- 안전보건 전문교육: 교육 1회
 -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실무 전문교육 실시
- 안전보건문화 확산
 -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유튜브 교육 콘텐츠 제작

**일환경건강센터 공개 세미나 기획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건관리적 접근 모색**

II 추진배경

-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주로 법적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인사, 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교육은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자들의 건강권 측면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궁극적 보건관리 전략에 대한 모색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사나 노무 부서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규리체계에 속한 작업주,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 대한 보건관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일환경건강센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심리상담사 분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일하는 사람 중의 건강을 중심에 둔 예방 대책을 고민하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괴롭힘의 피해자의 브로맨 아니라 직장의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손에 꼽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III 개요

- 일시 : 2019. 09. 25(수) 14:00~17:00
- 장소 : 일환경건강센터 교육장
- 대상 : 정주지역 내 50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그 외 직장내 괴롭힘 관리에 대해 관심있는 안전보건 관련 공사업자

주요 내용	①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사례관리, 예방의 의미 ② 직장내 괴롭힘과 노동자 건강 ③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	--

III 세부 일정

시간 계획	주요 내용	비 고
~14:00	▪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10~15:40	90' ▪ (발표1)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사례관리, 입법의 의의 - 직장강질 119(민간 공익단체) 돌곶 노동법률센터 공인노무사 조은혜	발표/질문
15:40~15:50	10' ▪ Break time	
15:50~16:40	50' ▪ (발표2) 직장내 괴롭힘과 노동자 건강 -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장경희	발표/질문
16:40~17:00	20' ▪ (발표3)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일환경건강센터 활용 가이드 -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직업환경의학전문) 류현철	발표/질문

일환경건강센터
지역직업건강역량강화 기획 세미나
노동자 정신건강 관리

일시 | 2020. 07. 14. (화) 14:00~17:30
장소 | 일환경건강센터 교육장 (경주시 흥덕구 지지대로 530)

- 1 노동자 정신건강 인식과 승인의 확장, 예방과 개입의 지체
-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 유현필
- 2 사업장 정신건강 권리 전략의 개요와 사례: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 안대주 국립환경의학과의사
- 3 위기 사업장 중재를 넘어서, 노동자 정신건강을 위한 일상 활동의 모색
- 노동자 심리지원사업단 유리영
- 4 노동자 정신건강, 실행가능한 1차 예방 전략 모색
-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의사 송현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참석을 원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zoom) 접속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043-904-7411 / center@cewh-koreaeshe.org



일환경건강센터 지역직업건강역량강화 기획세미나

**일터 정신건강 관리,
조직적 접근의 모색**

| 2020.12.14(월) 14:00~17:30 | 비대면 진행 |

- 세션 1** 일터 정신건강관리에서 조직적 접근의 의미와 사례
-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김형필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세션 2** 노동자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조직진단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자 심리지원 사업단 두리리리 상담활동가 여은제
- 세션 3**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조직적 개입을 위한 제도적 모색
-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 유현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세션 4** 자유토론

참여방법 | 링크/QR 코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8fna5CbuWxXt8567>
신청기간 | 2020년 12월 9일까지
참가비 | 무료



일환경건강센터

문의 | T.043-904-7412 Email. center@cewh-koreaeshe.org



일환경건강센터CWEH
구독자 125명

구독중

홈 동영상 관심목록 채널 정보

영포드란 동영상

장집 기준



과로서(비밀관-심장질환)와 산재표 : 과로서(비밀관-심장질환)와 산재표 : 「자존감 수업」 책 소개 : 근골격질환 예방을 위한 손과 온통 프로그램 : 청력보존 프로그램(EAR FIT TEST) : 피로카드 프로그램, 내 마음을 만나보는 시간!
조회수 69회 · 4일 전 조회수 88회 · 3주 전 조회수 92회 · 1개월 전 조회수 62회 · 1개월 전 조회수 115회 · 1개월 전 조회수 51회 · 2개월 전



뇌-심혈관-구체화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 근골격질환 산재 절차와 유의사항 1 : 근골격질환 산재 절차와 유의사항 2 : 허리강화운동! 어렵지 않아요! : 허리디스크!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 일환경건강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
조회수 41회 · 2개월 전 조회수 825회 · 3개월 전 조회수 498회 · 3개월 전 조회수 69회 · 3개월 전 조회수 178회 · 4개월 전 조회수 138회 · 4개월 전



일터의 건강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편 - 목욕기 운영질문 : 근골격질환예방 세라밴드 사용 : 근골격질환예방 퇴임질문 : 근골격질환 예방 이론1 : 일터 안전과 건강 :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조회수 148회 · 8개월 전 조회수 263회 · 1년 전 조회수 181회 · 1년 전 조회수 41회 · 1년 전 조회수 90회 · 1년 전 조회수 139회 · 1년 전

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사례¹⁾

박기옥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센터장

가. 추진배경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북구센터)는 북구지역 노동조건 실태조사(2006년 달천농공단지 노동환경실태조사, 2010년 북구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2012년 효문공단 노동실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과제로 실행가능한 의제를 선정하고 기획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복지 지원을 해왔음.
- 2012년 효문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면접조사 결과 노동복지에 대한 요구 중 ‘건강’ 과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을 의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기획하였음.
- 북구센터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모토대로 건강권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을 만나 <북구 지역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함.

나. 추진과정

- 북구센터는 보건의료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하여 2014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공모하였고,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할 수 있었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
- 2017년 울산광역시가 차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던 차에 북구센터가 5년간 사례를 만들어온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착안하여 2018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적 확장이 이뤄졌음. 또한 사업규모(예산 등)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넘어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근로환경 개선으로 내용적 확장도 가능하게 되었음.

1) 2021년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기본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시 작성한 자료를 보완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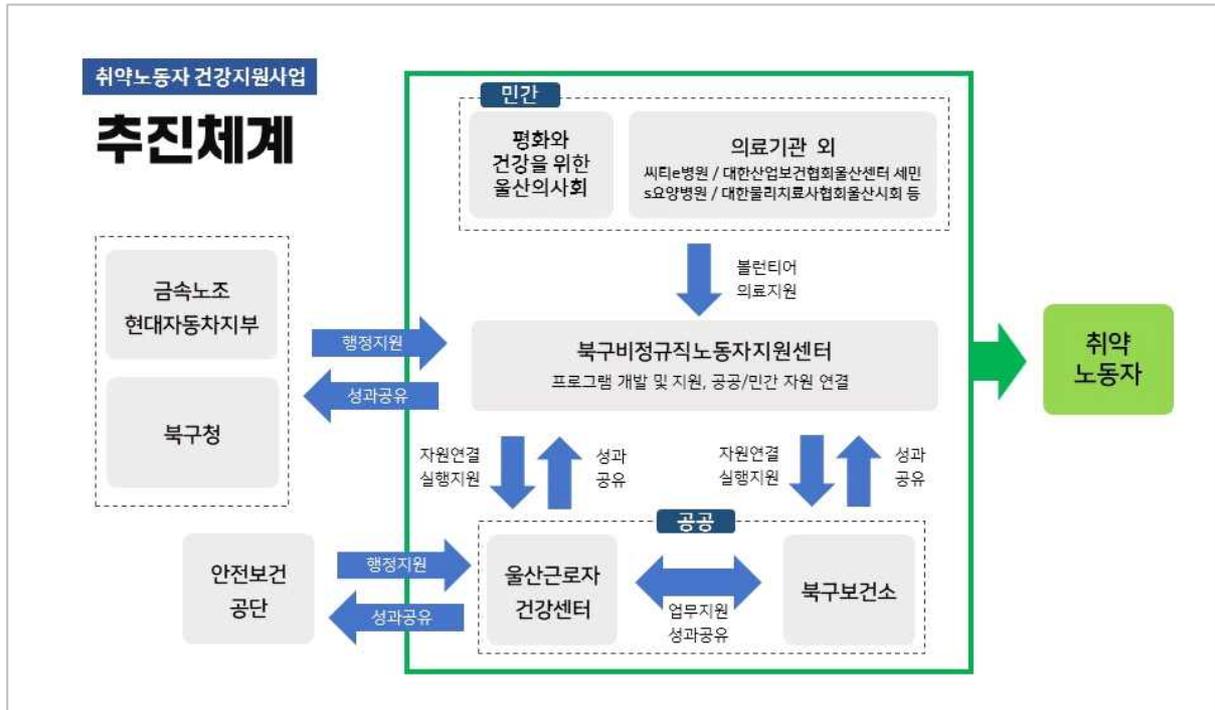
- 2018년 사업의 확장에 따라 사업 운영진과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3년간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사업 종료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 만들고, 조례 제정과 담당부서 마련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음.
- 2021년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라 사업제안자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북구비정규센터는 협업의 단위로,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함.

[표]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연도별 추진과정

연 도	내 용
2014년~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사업> - 사업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 수행기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7년 09월	현대자동차 노사-북구청 '건강버스' 기부 협약(사회공헌기금) -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사회연대사업 제안
2018년 04월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별 협의체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회의
2018년 09월	취약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북구보건소)
2018년~2019년 (사업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혁신프로젝트) <울산형 고용환경 취약계층노동자 건강증진사업> - 사업기관 : 고용노동부·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9년 04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관련 구청장 면담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단(김양호 교수 외)
2019년 05월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구청-비정규센터 간담회(2회)
2019년 06월	북구 의회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개최
2019년 09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TFT 1차 회의
2019년 10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TFT 2차 회의
2019년 11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확산 세미나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 사업기관 : 고용노동부·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0년 02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TFT 3차 회의
2020년 07월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울산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실)
2020년 09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토론회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담당자(경제일자리담당관실) 채용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2021년 05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위탁기관 : 사단법인. 울산시민건강연구원)
2021년 06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업무 시작
2021년 05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 : 자동차부품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

다. 추진체계

- 북구비정규직센터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림과 같이 협업기관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



<공공 및 민간의 협업 기관과 역할>



라. 추진내용

1) 사업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사례를 발굴, 확산
-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의 역할 제시
-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지원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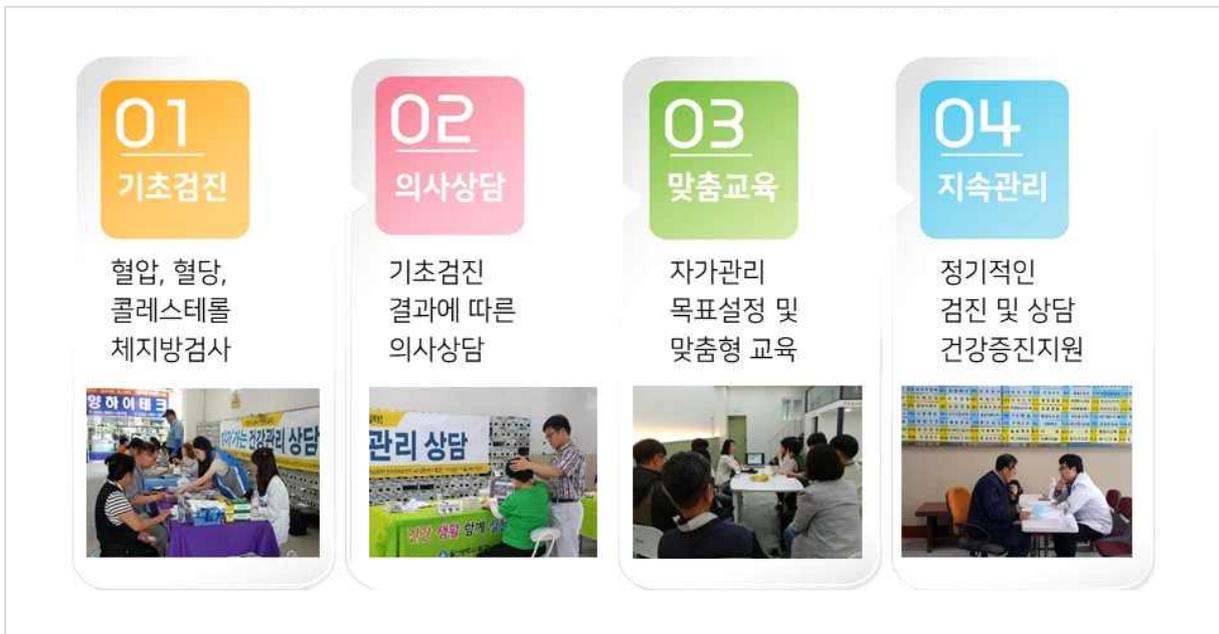
○ 기초검사 및 의사상담, 사후관리

- 내 용 : 기초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와 의사상담, 자가건강관리 안내 및 사후관리
- 방 식 : 사업장 및 공단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

- 내 용 : 근골격계질환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와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법 교육
- 방 식 : 작업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취약노동자 기초검사 및 건강관리 흐름>



○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

- 내 용 : 안전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한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워크숍 진행,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실무지원
- 방 식 : 안전보건교육시간(4시간)을 활용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진행
- 도 구 : 대책제안점검표, 우수사례 및 개선원칙, 그룹토의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기법 : 작업개선의 원리 및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아이디어에 자극을 받게하여 능동적으로 노동자들이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기법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워크숍 진행 흐름>



○ 사업대상

- 2014 ~ 2017 : 북구지역 공단(매곡, 달천, 시례, 효문)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 2018 ~ 2020 : 북구지역 공단(매곡, 달천, 시례, 효문)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운수노동자(버스, 화물), 학교경비노동자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 학교급식노동자
- 2021 ~ 현재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기법을 활용한 <자동차부품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

마. 추진성과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해 민이 주도하여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간 연계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모델을 제시하였음. 2018년 울산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 내 <근로자건강증진네트워크> 구성, 2020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이 이뤄졌고, 다양한 보건의료 볼런티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었음.
-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대기업 노사의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냄. 2017-2018년 현대자동차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 ‘건강버스’ 기부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음.

-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산하고, 좋은 사례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울산광역시 북구 2020.7, 울산광역시 2020.12)하였고, 북구는 경제일자리담당과실 내에 취약노동자건강증진 담당을,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였음.
-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성과를 나타냄.

바. 고민과 방향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북구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조사(2020년)’의 안전보건 및 건강관련 내용과 자동차부품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설문한 ‘자동차부품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2021년)’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미비함에 따른 안전보건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안전과 건강에 위험성이 있냐는 질문에 1/4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는 근골격계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이 높게 나타남.

반면, 소규모 사업장 대표 혹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응답한 안전보건서비스 니즈는 작업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이 높은 순위로 나타남.

따라서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건강증진 접근성을 높여내고,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관리방법 보급과 훈련,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게 우선적 과제임.
-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음.
- 지자체의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에 대한 조례, 지원사업 등이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소규모 사업장, 특성화고 노동안전보건컨설팅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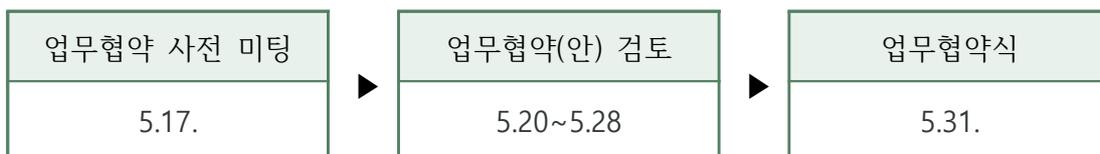
I. 소규모사업장 (자활센터) 노동안전보건컨설팅

■ 사업취지

- 2021년 50인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남지역자활센터는 50인미만 및 소규모 사업장, 고령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보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남지역 소규모 사업장(자활센터)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성질환 예방을 하고자 함

■ 추진내용

① 추진 준비내용 및 간담회 진행



② 업무협약

- 협약명: 전남 자활근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및 노동상담(교육)을 위한 협약
- 일시: 2021. 05. 31.(월) 14:00
- 장소: 전남광역자활센터 교육장
- 협약대상: 전남광역자활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5개 지역자활센터 (무안, 신안, 영암, 진도, 함평)

③ 교육 및 컨설팅(1차)

지역자활센터	날짜	지원내용	협업기관
영암	6월	근로기준법교육, 근골격계교육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무안	6월	근로기준법교육, 근골격계교육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신안	6월	근로기준법교육, 근골격계교육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진도	7월	근로기준법교육, 근골격계교육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함평	7월	근로기준법교육, 근골격계교육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④ 교육 및 컨설팅(2차)

지역자활센터	날짜	지원내용	협업기관
영암	9월	산업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무안	9월	산업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신안	10월	산업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진도	10월	산업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함평	11월	산업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 평가와 과제

① 사업성과

-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안전보건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규모사업장(자활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상담 지원을 함
- 전남지역 자활종사자들이 안전보건문제에 노출되었으나 그동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이 없었음,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찾아가서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실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 설정함
- 자활종사자들이 고령 및 흡연, 근골격계, 뇌심혈관 등 건강권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인식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② 향후 과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차 컨설팅이 영암 맞나사업단만 진행되었음.
- 함평자활사업단은 센터 내부문제로 인해 컨설팅을 진행하지 못함
- 22년에 전남동부권, 중부권 자활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컨설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남자활센터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함
- 전남지역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1. 영암자활센터 맛나사업단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보고서

■ 사업장 기본현황

지원사업장	사업장명	영암지역자활센터(맛나사업단)	사업장 관리번호	412-82-60283
컨설팅 기관	센터명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화번호	061-471-9933
	지원회차	1 회차	지원일자	2021.6.15.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요

연번	안전보건 컨설팅 주요내용
1	- 5kg 이상의 중량물에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쌀 포대(10kg)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한 요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허리조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바람
2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감지부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을 고려하여 LPG의 경우 바닥면에서 0.3m이내 설치되어 있으나, 음식물 찌꺼기가 부착을 예방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해 놓은 상태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제거 바람 - LPG 가스의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기 옆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시기 바람 - LPG 가스통은 물질명 표기가 되어 있으나, 넘어지지 않도록 실린더 캐비닛 또는 거치대를 이용하여 용기의 전도 방지를 위한 전도방지장치가 미흡한 상태임 - 가스버너는 LPG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작동 상태에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 바람
3	- 조리실에 가스버너 공정에 설치된 캐노피 후드의 경우 작업면과의 거리가 멀어 배기효율이 떨어진 상태임(0.35m/s측정 부적정 상태임/기준0.5~0.8m/s) - 배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드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기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후드에 외부식 플렌지 부착 - 배출구가 조리실 창문 상부에 설치되어 조리흠(Cooking fume) 등 재유입되어 확산될 수 있는 상태임
4	-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하여 전용의 소화기(F, K급)를 튀김기 옆에 비치한다(보통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유의 발화점은

	<p>238°C이며, 식물성 식용유가 동물성 식용유보다 발화점이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유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물 사용 금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에 비치된 소화기는 주변물품에 가려져 쉬게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되어있음. - 가급적 소화기는 작업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에서 사용하는 '락스'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 또는 게시바람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하며, 해당 노동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에 설치된 배전반 외함의 덮개가 탈락된 상태이며, 전선의 피복절연테이프 결속이 미흡한 상태로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조치 바람

■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나 사업장 특성상 누룽지 및 부각 만들시 여름철에서는 높은 기온 이 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휴식을 자주 할 것을 권유함 -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의 경우 손가락 등이 들어가지 않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시기 바람,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 바람
--

■ 현장사진



2. 영암자활센터 기품은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보고서

■ 사업장 기본현황

지원사업장	사업장명	영암지역자활센터(기품은)	사업장관리번호	401-82-73473
컨설팅 기관	센터명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화번호	061-471-9933
	지원회차	2 회차	지원일자	2021.08.23.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요

연번	안전보건 컨설팅 주요내용
1	- 5kg 이상의 중량물에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쌀포대(10kg), 식용유통(大)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한 요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허리조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바람
2	- 가스버너 / 튀김기는 LPG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작동 상태에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작동 불량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시기 바람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감지부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을 고려하여 LPG의 경우 바닥면에서 0.3m이내 설치하여야 함 - LPG 가스의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기 옆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시기 바람
3	- 조리실에 가스버너/튀김기 공정에 설치된 캐노피 후드의 경우 작업면과의 거리가 멀어 배기효율이 떨어진 상태임(0.38m/s측정 부적정 상태임/기준 0.5~0.8m/s) - 배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드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기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후드에 외부식 플렌지 or 에어커튼 설치 부착
4	- 제면기는 회전 칼날이 사용되고 있어 부주의한 사용시 베임과 협착 등의 사고 발생됨으로 재료 투입 시에는 누름봉을 사용하는 등 베임과 협착사고 발생 방지 필요한 조치 실시바람. - 제면기가 이물질에 의해 작동이 멈춘 경우 이물질 제거는 반드시 공구를 사용할 것
5	- 튀김기는 기름을 사용하여 고온에서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부주의하게 사용할 때에는 화재·화상 등 사고가 발생됨. - 기름 교환은 반드시 기름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유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하여 전용의 소화기(F, K급)를 튀김기 옆에 비치한다(보통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유의 발화점은 238°C이며, 식물성 식용유가 동물성 식용유보다 발화점이 낮음) - 식용유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물 사용 금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에 비치된 소화기는 주변물품에 가려져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되어있음. - 가급적 소화기는 작업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기타 특이사항

- 맛나 사업장 특성상 누룽지 및 부각 만들시 여름철에서는 높은 기온 이 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휴식을 자주 할 것을 권유함
-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의 경우 손가락 등이 들어가지 않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 바람

■ 현장사진



가스검지기설치부



가스통 전도방지조치



전기 배전함

3. 무안자활센터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보고서(1차)

■ 사업장 기본현황

지원사업장	사업장명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카페홍)	사업장관리번호	130-82-8210 5
컨설팅 기관	센터명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화번호	061-454-592 9
	지원회차	1 회차	지원일자	2021.6.10.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요

연번	안전보건 컨설팅 주요내용
1	- 5kg 이상의 중량물에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원두자루(5, 20kg)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한 요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허리조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바람
2	- 작업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별도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3	- 전기시설(배전반)의 경우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폐쇄형 외함으로 설치 되어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4	- LPG 가스의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기 옆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시기 바람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감지부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을 고려하여 LPG의 경우 바닥면에서 0.3m 이내 설치되었으나, 가스온수기의 경우 미흡한 상태임 - 원두 로스트기계는 LPG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작동 상태에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작동 불량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시기 바람
5	- 스팀기의 경우 고온증기 배출에 의한 화상 등의 재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재해 예방을 위해 '뜨거움 주의' 안전보건표지 설치 바람
6	- 커피원두의 로스트 작업시 고열 및 커피분진 제거를 위한 밀폐형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7	- 가급적 소화기는 작업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기타 특이사항

- 커피 원두의 로스팅 작업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이루어지며, 1회 작업시 40~60분정도 소요됨
- 커피 원두는 각 5kg, 20kg의 포대로 포장되어 반입됨
- 커피 작업시 여름철에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있어 열에 의한 사고 위험성 있음. 현재 사무실 밖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조치

■ 현장사진



4. 신안자활센터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보고서

■ 사업장 기본현황

지원사업장	사업장명	신안지역자활센터(향촌)	사업장관리번호	208-82-6813 9
컨설팅 기관	센터명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화번호	061-271-678 4
	지원회차	1 회차	지원일자	21.6.30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요

연번	안전보건 컨설팅 주요내용
1	- 5kg 이상의 중량물에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원두자루(5, 20kg)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한 요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허리조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바람
2	- 가스버너는 LPG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작동 상태에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작동 불량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시기 바람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감지부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을 고려하여 LPG의 경우 바닥면에서 0.3m이내 설치하여야 함 - LPG 가스의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기 옆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시기 바람
3	- 조리실에 ①가스버너에 설치된 캐노피 후드는 적정 상태로 가동 중임. (0.52m/s측정, 적정 상태임/기준0.5~0.8m/s) ②조리실 내부벽면에 설치된 가스버너의 경우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흙(Cooking fume, 조리시 나오는 연기) 및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에 그대로 노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실시 및 국소배기장치의 추가 설치 등 고려 바람
4	- 제면기는 회전 칼날이 사용되고 있어 부주의한 사용시 베임과 협착 등의 사고 발생됨으로 재료 투입 시에는 누름봉을 사용하는 등 베임과 협착사고 발생 방지 조치 실시바람 - 제면기가 이물질에 의해 작동이 멈춘 경우 이물질 제거는 반드시 공구를 사용할 것 - 위험시 급정지 시킬 수 있는 적색의 돌출형 버섯 형태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함
5	- 조리실 및 실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가급적 이용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

	<p>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보통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유의 발화점은 238°C이며, 식물성 식용유가 동물성 식용유보다 발화점이 낮음)</p> <p>- 식용유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물 사용 금지</p>
6	<p>-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바람</p> <p>- 감전예방을 위하여 외함접지 또는 접지극이 있는 전원 플러그 콘센트를 사용한다. 또한 콘센트에는 문어발 형태로 플러그를 꽂지 않도록 관리바람</p>

■ 기타 특이사항

<p>- 바닥은 기름기, 음식물, 찌꺼기 및 물기 등이 흡수되지 않아야 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p>

■ 현장사진



II. 전남특성화고 실험 실습실 안전컨설팅

■ 사업배경

- 전남지역 특성화고 실습생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사각지대
- 또한 실습학교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보건관리자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실습실 작업환경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설비는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안전보건 측면에서 전체적인 실태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형성하여 전남지역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성질환 예방 필요함

■ 사업목표

- 전남지역 특성화고 학교와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산업안전기사, 산업간호사, 직업환경전문의(의사) 등 네트워크 구성 ※ 2019년 진도실고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진행하였음
- 일시: 2020년 7월-11월까지
- 학교수: 특성화고 실습학교 3개 (2개월에 1번 방문) 총 2회

■ 안전 컨설팅 내용

분야	안전보건 컨설팅 주요내용
일반	- 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여부 -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 개선 노력
화학	- 화학물질의 성산병 분류 보관, 라벨 부착
소방	- 비상구 관리상달 및 소화기 비치여부 - 화재감지기 및 소화설비 적정성 등
전기	- 전기과부하 및 접지상태 - 전기배관 정리 및 피복(절연) 상태 - 분전함 내 차단기 용량과 규격
가스	- 가스용기 보관상태 - 가스배관 설치의 적정성 및 누설 부식상태 - 가스누설경보장치 등 안전설비의 설치 상태
기계	- 각종 기계기구 안전장치 작동상태, 안전장치 명세서 점검 - 각종설비의 안전 매뉴얼 점검

■ 진행일정(사업일정)

월	주요내용	비고
5월	취지 설명 및 유관기관 방문	
6월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학교 안전보건컨설팅 예약 접수 및 협약(3개 학교)	교육청 협조
7월	안전보건 컨설팅 1차 안전보건 캠페인	
8월	안전보건 컨설팅 2차	나주공고 컨설팅
9월	안전보건 컨설팅 3차	해남공고 컨설팅 희망자원 컨설팅
10월	안전보건 컨설팅 4차	나주공고, 해남공고
11월	성과 간담회(사업평가)	전남교육청

■ 사업결과

- 전남지역 실습고등학교(특성화) 학생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인지 향상
- 전남교육청 산업재해예방을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방안 건의
- 사업장내 위험요소 발견하여 사업주 건의
- 특성화고 실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으로 인한 작업환경개선(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정책과제 제시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여 유해물질 정보 접근성 지원

■ 현장 사진



해남공고 실습장 연삭기 분진 발생



나주 공고 실습장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고민

성지민 (부산노동권익센터 주임)

1.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내용

1) 전국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광역·기초지자체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²⁾’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³⁾는 828명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한 건설현장에서 417명(50.4%)이 숨졌는데, 이 중 298명(71.5%)은 공사비용이 50억 미만인 현장에서 일했다. 제조업에서는 184명(22.2%)이 숨졌고 이 중 135명(73.3%)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도 전체 산업재해 사고의 80.9%(670명)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⁴⁾은 1.76으로 전체 평균 1.07보다 높다.⁵⁾

<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건축·구조물		기계·장비		부속물 및 설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1년	417	239	57.3	108	26.0	41	9.8
2020년	458	251	54.8	93	20.3	87	19.0
증 감	△41	△12	2.5	15	5.7	△46	△9.2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2. 3. 15.

< 규모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1년	184	42	22.8	93	50.5	34	18.5	15	8.2
2020년	201	38	18.9	120	59.7	34	16.9	9	4.5
증 감	△17	4	3.9	△27	△9.2	0	1.6	6	3.7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2. 3. 15.

2)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2. 3. 15.

3) 사고사망자수=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 및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한 경우는 제외)

4)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00

5) 안전보건공단,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2. 3. 17.

2) 부산광역시

21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21명(26.7%), 경남 81명(9.8%), 경북 67명(8.1%), 서울 66명(8.0%), 충남 56명(6.8%), 부산 54명(6.5%) 등 6곳이다. 좀 더 세부적인 통계를 알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부산지역(부산청·부산동부·부산북부 관할) 제조업에서 2021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7명, 재해자 수는 1,572명이다. 그 중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9명(53%)으로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고, 재해자수는 1,220명으로 무려 78%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명 사망, 391명의 재해자 발생)

건설업에서 2021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2명, 재해자 수는 1,263명이다. 그 중 5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15명(68%)이며 838명(66%)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1인 미만의 건설업에서 3명 사망, 285명의 재해자 발생)

부산지역 전체 사업장 재해자 5,984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재해자 수는 4,554명으로 76%이고, 사망자 54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89%에 해당한다.⁶⁾

2.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가. 고용노동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발간('21.8.)하고, 분야별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다.

②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및 노후공정(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활용 공정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진단표 송부 및 유선상담 운영(2021. 10.)하고 4차례에 걸쳐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현장 컨설팅 진행한다(2021. 11.~12.)

6)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결과임

고 홍보하였다.

나. 안전보건공단

①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추락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시스템 비계의 안전한 설치와 화기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사고사망위험이 높은 완성 배 및 선박 구성품(블록) 제작업체의 협력사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수리조선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⁷⁾

②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중상해 재해 예방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건설·화학·서비스 분야에서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핵심 위험요인 지도 등 기술지원, 사업장 실태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안내·지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제도 안내, 방역관리 지원,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한다.

③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한다. 2022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한다.

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끼임방지 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롤러기 안전장치 등),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7)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조선업 재해예방, 지킴이가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2021. 1. 26.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등),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채광창 안전덮개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설비(국소배기장치, 발산원 밀폐 설비 등)를 지원한다.

⑥ 건강디딤돌 사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 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다. 근로자건강센터

부산근로자건강센터와 양산분소는 안전 및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공공기초 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주치 및 사후관리 사업 등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상담 및 질병 예방상담, 스트레스 해소상담, 운동처방 및 작업 환경 개선 상담을 진행 중이다.

2) 부산광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는 지자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 장애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0. 5. 27.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산업재해예방TF팀(담당인원 3인)을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 두고,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2022. 1. 25. 부산시장 주재로 「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⁸⁾를 개최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산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공고(2022. 3. 24.)하는 등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강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기반 조성’ 4개의 전략과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산업재해 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 - 중점 추진과제 >

전략	중점 추진과제 (14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 기업별 산재예방 맞춤지원 ■ 부산형 클린사업장 확대(고용노동부 연계)

8)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2026년까지 산재사망 50% 감축한다... 대책 마련 나서, 2022. 01. 25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노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 ■ 건설 현장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 ■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 항만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강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노동자 작업중지권 활성화 ■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0(제로) 캠페인
산업재해 예방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예방 사회성과보상 시범사업 ■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운영 ■ 산업재해예방 특별자금 지원

부산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활동을 위해 2021년 5월, 13명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2022년 4월 6일, 22년도 신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위촉하고 22년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3.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와 한계점

1) 제도적 한계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체제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거나 미비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특·광역시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를 차지하고 그중 80.8%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또한 부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67.9%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⁹⁾ (대구가 71.4%로 가장 높음)

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3&vw_cd=MT_ZTITLE&list_id=K22_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2. 4. 5 검색

<특·광역시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사업체 수	비율 (%)	사업체 수	비율 (%)										
전규모	823,824	100.0	290,357	100.0	210,944	100.0	206,244	100.0	123,706	100.0	119,828	100.0	87,054	100.0
1~4인	647,823	78.6	234,741	80.8	173,839	82.4	162,876	79	99,468	80.4	97,090	81.2	70,656	81
5~9인	104,730	12.7	33,559	11.6	22,528	10.7	25,979	12.6	14,730	12	13,645	11.4	9,357	11
10~49인	59,167	7	18,577	6.4	12,371	5.8	14,903	7.2	8,079	6.5	7,396	6.2	5,686	6.5
50~299인	10,409	1	3,231	1.1	2,024	1	2,318	1.1	1,334	1	1,367	1.1	1,253	1.4
300인 이상	5,422	0.7	249	0.1	132	0.1	168	0.1	95	0.1	130	0.1	102	0.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특·광역시 기업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종사자 수	비율 (%)	종사자 수	비율 (%)	종사자 수	비율 (%)	종사자 수	비율 (%)	종사자 수	비율 (%)	종사자 수	비율 (%)	종사자 수	비율 (%)
전규모	5,226,997	100.0	1,465,433	100.0	967,934	100.0	1,092,494	100.0	631,876	100.0	633,418	100.0	533,187	100.0
1~4인	1,181,509	22.6	430,309	29.4	307,393	31.8	291,034	26.6	182,583	28.9	174,448	27.5	125,582	23.6
5~9인	654,909	12.5	210,646	14.4	147,370	15.2	165,169	15.1	92,810	14.7	85,757	13.5	58,893	11.0
10~49인	1,090,353	20.9	352,506	24.1	235,884	24.4	282,182	25.8	152,216	24.1	140,213	22.1	113,726	21.3
50~299인	1,084,056	20.7	308,999	21.1	193,041	19.9	220,519	20.2	132,044	20.9	135,302	21.4	117,532	22.0
300인 이상	1,216,090	23.3	162,973	11.1	84,246	8.7	133,590	12.2	72,223	11.4	97,658	15.4	117,454	22.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특히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고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여 기초적인 안전보건체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와 교육도 제공받지 못한 채로 위험 상황에 내몰린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거의 갖기 어렵다.

나. 관리감독의 부재

이렇게 반복적인 사고에도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가 매우 많고 산재해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모두 관할하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특정한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폭넓게 적용되지만 일정한 산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상당부분을 적용제외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¹⁰⁾

10) 박주영, 작은사업장 노동권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노총 총서 2020-03

2) 현실적 한계

가. 지속가능성

소규모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지원이 끝나면, 개선 활동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 사업에는 재정 뿐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개별 지원 사업을 확충하는 것에 앞서 지원이 현장에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비용과 우선순위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하여도 재정 문제 등 현실적으로 바꾸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추가비용의 문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여러 이유로 안전보건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진다.

다. 접근성

현장의 안전보건을 담당할 인원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생산 차질이나 흑시나 발견될 문제 사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건강센터나 노동안전지킴이의 경우 현장 점검이 기본이지만 민간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지원 대상 사업장을 찾아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 업무 연속성

요즘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부여되고 집중되고 있다. 지킴이단이 현장 점검을 나가는 관련 부서 및 사업소, 구·군의 현장 출입 협조를 위한 일정 조율, 자료 요청 등 업무를 인권노동정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시간동안 3번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킴이단 활동이 보여주기식 현장점검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지킴이단 사업 외에도 실질적 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도 중요하겠다.

4.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고민

1) 노동안전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및 안전보건관리행정체계 구축

- 노동정책의 통합적 사업수행과 부서 내 담당자의 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확보 및 역량강화, 단회성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지속적 노동안전 사업관리 필요

2) 계획하고 있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행정기구 강화와 전문화

- 부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적극적으로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확장,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센터(노동안전보건센터·서부산의료원) 등으로 운영(과주 사업장주치의 사업)
-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 및 운영

3)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 50인·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공단 차원의 관리자 선임 등의 사업장 체계 구축, 현장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감독(안전보건지킴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 등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사업자등록 및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 안전보건 전담 인력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지원(전담자 채용 지원)

4) 지역 내 단체와 적극적 협업 관계 수립

- 근로자건강센터·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도담도담·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과의 협업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접근, 노동안전보건 사업주 기초 교육

참고문헌

- 류현철, 지자체 노동행정실태조사 노동안전보건분야, 민주노동정책연구원토론회, 2019. 11. 24.
- 박종식, 작은사업장 노동자 분포 현황과 특성,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2020. 12. 26.
- 손헌일, 중대재해 제로(ZERO)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언, BDI 정책포커스 제393호, 2021.03
- 최민, 작은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과제, 작은사업장 노동자 안전할 권리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20. 12. 7.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